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지비유데이터링크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저장분배 S/W 1786식, 저장분배서버(MAX 136TB) 1식, 선별관제 서버H/W#4,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H/W#5, 지능형(AI) 선별관제시스템 라이선스 130조,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선스 39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84,260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제조사·공급사명 ㈜지비유데이터링크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에스네트웍스㈜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차량 백업시스템, 시간 동기화 시스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6,959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에스네트웍스(주)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라이노정보기술
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원격지원관리시스템 2조, 컴퓨터서버(WB424-P2) 5대, 위안미디어 STD V2.5, 스마트도시안전망서비스(범죄예측지도, Vmware),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 10대 연계모듈, VURIX통합플랫폼시스템 1식, 디지털군수실(전자칠판, 대시보드개발), C9300-24T-A 1대, C1000-24T-4G-L 1대, AXGATE 4000S 1대, AIWAF-200_Y20, BLUEMAX NGF 300 1대, KXL-1908KVM스위치 1대, IP관리기 1식, 컴퓨터서버(DT170) 1대, 컴퓨터서버(DT170-G971-3DI) 5대, 컴퓨터서버(RB228-P7) 1대, 컴퓨터서버(TX2-M7-506) 5대, 컴퓨터서버(RDEE-EF-34MJD) 1대, 항온항습기 1식, RC2212-Q3 3대, SR146C2-v4 2대, SR226C2-v3 1대, SH7-2212E e5 3대, RF2103-P1 3대, MDS 9132T 2대, TCOS V3.0 1대,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소프트웨어(Vurix) 320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90,149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라이노정보기술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에이블클라우드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Ablestack V4.0 HCI 및 가상화 솔루션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2,143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에이블클라우드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시큐어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패스워드관리시스템 1식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4,541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시큐어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지오멕스소프트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공간정보시스템(GIS) 1식, GEOMEX-Webv4.0 1식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8,037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지오멕스소프트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(주)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VSP G200, VSP G350, VSP G350, VSP E590, DB60 4식, 스토리지 총 1764TB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57,852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(주)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정원엔시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HPE MAS 2060, HDD 20TB * 20EA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1,728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정원엔시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월네트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N9K-C9372PX 48Port 1대, WS-C3750-X24 1대,
C2960-S Series PoE+ 10G 2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2,980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월네트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윈스테크넷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SNIPFR NGFW 5100 2대, SNIPER NGFW 5530 1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8,072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윈스테크넷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㈜한싹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Securegate V3.5 5식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.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15,858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 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한싹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이레산업㈜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함체보안시스템 147조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7,673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 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이레산업㈜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누리콘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IP Wallcontroller(ViewFlex Server FHD08) 1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1,609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누리콘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이에스이㈜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Rino-WCS24U, Intel Xeon E5-2650 v4(2.2GHz)x2, 24유저용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5,039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이에스이㈜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기 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지원아이앤씨(주)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여자화장실 비상벨 22개소, 비상벨시스템(서버 1식, 단말 41개소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6,502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지원아이앤씨(주)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발주기관 : 함안군청
○ 제조사(공급사) : 뉴피에스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무정전전원장치(UNIPOS-3000S-100K-60R) : 1식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(용역)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을 금2,310,000원(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10. .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뉴피에스 (인)

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업명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물품명: 차량번호인식 CCTV 45대, 서버 3대
○ 발주기관: 함안군청
○ 제조사 . 공급사: 렉스젠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'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.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.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.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, 기초금액(금12,804,000원)에 낙찰률(87%적용)을 반영(곱셈)한 금액(11,139,000원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 . 공급사명 렉스젠(주) (인)

물품공급 .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업명: 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
○ 물품명: 차량번호인식 CCTV 23대, 서버 2대
○ 발주기관: 함안군청
○ 제조사 . 공급사: ㈜씨플러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'2027년도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'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.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.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.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.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. 공급사의 물품공급 .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, 기초금액(금7,168,000원)에 낙찰률(87%적용)을 반영(곱셈)한 금액(금6,236,000원) 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.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.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. 공급사는 물품공급 .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함안군수 (인)

제조사 . 공급사명 ㈜씨플러스 (인)